

# 技術導入 案内 (Ⅱ)

## V. 技術導入契約上の 不公正한 内容

独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거 國際契約上の 不公正去來行爲 類型中 技術導入과 關連되는 内容 및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部品購入先의 指定

原材料 및 部品 等(以下 “原材料”라 함)을 技術提供者 또는 그가 指定하는 者로부터 不當하게 購入하도록 하는 경우(告示 第1項 가호)

#### 가. 告示内容 및 目的의 解説

原材料의 購入先에 대한 決定權은 그 物件을 사용하는 技術導入者에게 있어야 하며, 特정한 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技術提供者의 우월적 지위를 濫用한 것으로 不公正한 去來方法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가장 값싸고 좋은 品質의 原材料를 구입할 수 있는 可能性을 찾는 것은 技術導入者의 義務이며 權利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技術提供者가 指定하는 高價의 原材料購買가 必要될 可能性을 높이기 때문이다.

#### 나. 具體的 事例의 說明

技術導入契約은 그 形態가 다양하고 技術提供者가 자신의 固有樣式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類型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우나 빈번히 나타나는 不公正한 條項을 例示的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技術導入者는 契約製品에 필요한 原材料, 機械, 設備 등을 技術提供者로부터 구입하

여야 한다.」

本事例는 특별한 理由의 명시없이 技術提供者로부터의 部品 등 購入이 강제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技術導入者의 購入先決定權이 不當하게 박탈되므로 不公正한 條項이며 부품 등은 技術導入者가 임의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技術導入者는 技術提供者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技術導入者는 原材料를 技術提供者 또는 그가 指定하는 者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商標使用과 關連하여 購入先을 指定하는 경우로 상표의 信譽확보를 위해 일정한 水準 以上의 品質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契約製品의 品質 확보는 他物品 또는 他方法(例: 性能試驗)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購入先의 제한은 不公正한 條項이 된다.

原材料의 購入先을 제한하지 않으면 品質 확보가 불가능한 적극적인 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品質의 保證을 위해서 技術提供者의 製品과 같은 水準의 製品을 생산할 수 있는 原材料를 사용한다.」든가 「技術導入者의 原材料가 品質 확보에 부적합한 경우, 技術提供者는 正當한 理由를 명시하여 개선을 요구한다.」는 内容으로 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이한 경우로 「部品을 技術提供者로부터 구입한 契約製品에는 技術提供者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條項은 商標使用 與否가 技術導入者의 판단에 의하 므로 不公正한 契約條項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경우에도 「技術提供者는 국제적으로 타당한 가격과 조건 또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關聯部품을 공급한다.」는 規定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3) 「契約製品 製造에 필요한 機械, 部品 등 이 韓國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 技術導入者는

編輯者 註: 本稿는 지난 호에 이어, 財務部에서 發行한 「技術導入案内更覽」(1973. 3)의 内容 中에서 발췌한 글임을 밝힌다.

技術供給者로부터 이를 구입하여야 한다。」

国内調達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특정한 購入先이 지정됨으로서 부당한 價格을 유발시킬 수 있고 第3의 시장을 찾을 수 있는 技術導入者의 權利를 박탈하게 되므로 부당한 条項이다.

따라서 技術導入者가 임의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技術提供者의 供給價格이 他供給者에 비해 유리하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 技術導入者는 技術提供者의 原材料를 購入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4) 「技術導入者는 原材料를 技術提供者가 品質을 인정한 곳으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技術提供者가 品質을 인정하면 어느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지만 技術提供者만이 品質에 대한 判斷權을 갖게 되어 부당하게 運用될 可能性이 있다. 따라서 購入을 技術導入者에게 일임하거나 「品質에 관하여는 相互協議하여 契約製品의 品質 확보가 가능한 原材料를 구입한다.」라고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 2. 販賣地域(輸出地域 包含)의 制限

技術提供者가 提供한 技術(以下 “契約技術”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製造한 製品(以下 “機契製品”이라 한다)에 관하여 販賣地域을 제한하는 경우, 다만 輸出制限地域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技術提供者가 技術導入者의 輸出을 제한하는 地域(以下 “制限地域”이라 한다)에서 이미 契約技術을 登録하고 있는 경우

② 技術提供者가 制限地域에서 契約製品에 대하여 경상적 販賣活動을 하고 있는 경우

③ 技術提供者가 制限地域을 第3者의 独占的 販賣地域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告示 第1項 나)

### 가. 告示內容 및 目的의 解説

契約製品을 어느 地域에 판매할 것인가는 技術導入者의 意思決定에 의하여야 하며, 国内의 販賣地域을 한정 또는 분할시키거나 輸出地域

을 제한하는 것은 不公正한 行爲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技術導入契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輸出地域의 제한이다. 이것은 개별적인 기업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經濟가 海外市場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規模의 경계를 이룩할 수도 장기적으로 經濟成長을 달성할 수도 없다는 실정을 감안할 때 단지 技術導入者 자신은 현재 輸出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판단된다. 또 契約 당시에는 그다지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러한 制限規定이 威力을 발휘하여 企業과 나라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輸出地域을 제한하더라도 本条項의 但書規定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但書 1호의 경우는 制限地域内에서 技術提供者가 이미 法的 保護를 받는 특허권 등을 登録하게 되면 技術提供者가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그 地域으로의 輸出은 法的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但書を 인정한 이유는 技術提供者 자신이 이미 개척하여 놓은 시장을 喪失하면서까지 그 地域으로의 輸出을 허용하는 것은 通常의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經常的 販賣活動”이란 支店, 營業所 등 恒久的 施設을 설치하여 日常의 생산 또는 판매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헐적인 販賣 정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但書 3호는 技術提供者가 특정한 目的으로 第3者의 独占的 販賣權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다시 他技術導入者에게 그 地域内로 수출을 허용하는 것은 契約違反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다.

上記 但書条項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契約內容에 일부 또는 전부가 삽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但書 1호와 2호는 契約當時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앞으로의 予定地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但書 3호는 契約 당시 또는 契約期間中 확정된 곳에 한하며 단순한 計劃地域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나. 具體的 事例의 說明

1) 「技術導入者は 契約기간중 契約製品을 수출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없이 販賣地域을 제한하는 것은 經濟權의 부당한 침해로 불공정한 去來行爲가 되며, 契約製品을 技術導入者가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告示但書 條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할 수 있다.

2) 「技術導入者は 韓国内에서 契約期間中 契約製品을 제조, 판매할 수 있다」 또는 「技術提供者는 技術導入者에게 韓国内에서 契約製品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실시권을 許与한다.」

輸出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輸出制限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러나 輸出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향후 紛争時 技術導入者의 부당한 피해방지를 고려할 때 輸出許容与否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또는 「韓国内에서 생산하고 그리고 판매할 權利(Rights to produce in Korea and sell)」로 수정하여야 한다.

3) 「契約製品은 韓國 및 東南亞地域에 한하여 販賣하여야 한다」 또는 「契約製品은 美国, 日本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國家에도 販賣할 수 있다.」

告示 但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經營權의 부당한 침해이며, 따라서 但書地域 以外の地域과 但書地域中 技術提供者가 허락한 地域에 대하여는 수출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4) 「技術導入者가 契約製品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技術提供者의 사전 書面同意(승인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技術提供者가 技術導入者의 契約製品에 대한 輸出許容与否의 決定權을 가지게 되어 技術提供者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부당한 조항이 된다.

따라서 契約製品을 技術提供者의 동의(승인, 합의) 없이 輸出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필요시 但書條項을 활용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동의, 승인 또는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事前協議나 통지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技術

提供者가 輸出許容 여부의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5) 「技術導入者가 契約製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통상 실시료의 2 배를 지불하여야 한다.」

契約製品의 국내 판매에 대하여 一定技術料를 지불하도록 約定하고 輸出分에 대하여는 割増料를 부과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수출의 경우에도 国内販賣와 동일한 技術料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割増料, 賦課地域이 告示 但書 해당지역인 경우에는 불평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3. 販賣窓口(輸出窓口包含), 販賣價格 등의 制限

契約製品에 관하여 技術導入者의 販賣窓口, 販賣數量 또는 販賣價格(“再販賣價格”을 포함한다)을 제한하는 경우.  
다만 技術提供者가 “나호”의 制限地域에 대하여 技術導入者의 수출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告示 第1項 나호)

#### 가. 告示內容 및 目的의 解説

販賣行爲 등 經營方針은 그것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한 經營者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尊重되어야 한다.

따라서 販賣窓口(販賣先), 數量, 價格 등의 결정이 他契約当事者에 의해 강요되는 것은 공정한 去來行爲로 볼 수 없다. 本條項은 수출과 国内販賣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예를 들어 輸出價格이나 輸出市場에서의 小売價格을 구속하는 것도 불공정한 去來行爲가 된다.

輸出制限地域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但書條項이 설정된 이유는 본條項은 원래 수출이 가능한 것을 한 것으로서 技術提供者가 제한할 수 있는 市場을 技術導入者에게 분할하여 주면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技術導入者는 輸出制限의 해제에 따른 이익과 輸出制限時의 불이익을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나. 具體的 事例의 說明

1) 「技術導入者は 技術提供者가 지정하는 자를 통해 제품을 수출하여야 한다.」

특별한 이유없이 販売窓口를 제한하는 것은 경영권의 부당한 침해로서 삭제하거나 技術導入者가 임의로 선택한 窓口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다만, 告示 “나”号 但書地域에 대한 輸出窓口 제한은 告示 “나”号的 但書에 따라 인정된다.

2) 「技術導入者は 全生産物量 또는 그 일부를 반드시 技術提供者에게 수출하도록 한다.」

開発初期의 경우 技術提供者를 이용하는 것이 輸出市場開拓에 유리한 면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技術提供者는(技術導入者가 생산한 契約製品을 수입하도록 노력하며) 技術導入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수입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로 수정하든지 또는 「이 경우 技術導入者의 輸出價格의 수준으로 兩当事者間의 합의에 의한다.」는 단서를 추가시켜야 할 것이다.

3) 「技術導入者は 技術提供者가 지정한 者 또는 技術提供者의 승인을 받은 특정업체나 高級小売店에서만 契約製品을 판매할 수 있다.」

本 条項도 販売窓口를 지정하는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技術導入者は 技術提供者의 품위를 실추시키지 않을 高級小売店 등에서 契約製品을 판매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4) 「契約製品의 輸出價格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契約製品의 가격은 우리나라 市場內 他會社의 類似製品의 평균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販売價格의 결정은 企業의 經營戰略이므로 특별한 이유없이 販売價格을 제한하는 不公正 条項으로 삭제하거나 技術導入者가 임의로 販売價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다만 告示 “나”号 但書地域에 대한 輸出價格 指定은 인정된다.

5) 「契約製品은 100万個 이상 수출할 수 없다.」 또는 「100万個 이상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技術提供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별한 이유없이 販売數量을 제한하는 不公正 条項으로 삭제하거나 技術導入者가 임의로 輸出

數量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다만, 告示 “나”号 但書地域에 대한 수출수량 제한은 인정된다.

#### 4. 競争品, 競争技術의 取扱制限

競争的 製品의 取扱이나 競争的 技術의 使用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告示 第 1 項 라号)

가. 告示内容 및 目的의 解説

本 条項은 契約製品이나 契約技術과 競争關係에 있는 유사 또는 대체가능한 제품 및 기술의 供給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技術導入者의 製品多樣化 또는 他先進技術導入 등이 불가능하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독점적 실시권이 허용되어 技術提供者의 國內 타사업자에 대한 實施權許与가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導入者의 既保有技術의 使用이나 既存製品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한 競争技術이나 제품의 供給을 제한하는 것은 인정된다.

나. 具體的 事例의 說明

1) 「技術導入者は 契約期間中 契約製品과 경쟁이 되는 여하한 제품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第 3 者와 競争技術導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또는 「技術導入者は 契約期間中 契約製品과 경쟁이 되는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技術導入者가 契約제품과 경쟁적인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契約終了後 2年 이내에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실시권의 형태가 비독점적 실시권인 경우 競争製品이나 技術의 供給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삭제하거나 또는 技術導入者가 경쟁제품(즉 생산경쟁제품 포함)을 供給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독점적 실시권의 경우에는 地域內에서의 독점적 生産販賣權이 주어지므로 競争製品技術의 供給이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기존 생산하고 있는 競争製品의 제조, 판매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技術導入者は 契約製品과 경쟁적인 製品을 제조 판매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미 製造・販売하고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條項은 前述한 이유로 獨점적 實施權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2) 「技術導入者は 契約製品과 경쟁적인 製品을 製造・販売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技術提供者의 事前書面同意(승인, 합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項의 경우 技術提供者가 경쟁제품의 취급제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므로 앞의 경우에 準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다만 통지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결정권을 技術導入者가 가지므로 인정된다.

3) 「技術導入者は 契約기간 滿了以後 3년 간은 경쟁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契約期間 滿了 以後의 경쟁제품의 제조 판매는 여하한 경우에도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항은 삭제하거나 技術導入者가 契約滿了後에 경쟁제품을 自由로 취급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4) 「技術導入者は 本契約의 早期終了 되는 경우 終了後(또는 終了後 3년간) 이와 유사한 製品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契約의 早期終了事由가 技術提供者의 歸責事由에 기인한 것일 경우는 (3)項의 경우와 같다.

다만, 技術導入者에게 技術料支払拒絶 등 歸責事由가 있는 경우 技術제공자에 대한 被害補償이라는 면을 고려할 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쟁제품의 取扱制限期間은 당초 契約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5. 改良技術의 一方的 提供 등

契約当事者間의 互惠的인 義務없이 技術提供者에게 契約기간중에 개발된 改良技術을 一방적으로 제공 또는 보고하게 하는 경우(告示 第1項 마호)

### 가. 告示內容 및 目的의 解説

本條項은 소위 一方的「그랜트 백」(Grant Back)

의 禁止 規定이다. 技術導入者가 契約技術을 기초로 하여 改良한 技術은 어디까지나 技術導入者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改良技術은 技術導入者에게 歸屬되어야 하며 그 사용도 技術導入者의 自由의사 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本條項의 基本적 判斷 基準은 互惠平等의 원칙으로서 改良技術에 대한 權利의 歸屬, 告知義務, 實施地域, 實施權의 形態(獨점, 非獨점), 實施期間, 實施對價, 再實施權 등에 있어서 兩当事者間에 互惠平等的인 것을 要求하고 있다. 나. 具體的 事例의 說明

1) 「技術導入者에 의해 개발된 改良, 改善, 發明 및 이에 따른 特許權 등은 技術提供者의 所有로 한다」

또는 「技術導入者가 契約製品과 관련하여 改良을 한 경우, 技術導入者와 技術提供者는 共同 名義로 또는 各各의 國家에 있어 自己名義와 費用으로 特許를 출원할 권리를 가진다.」

技術導入者의 노력에 의해 이룩된 改良技術이 技術提供者의 권리로 귀속되는 것은 당연히 不當한 條項이 되며, 技術導入者의 所有가 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다만 歸屬自体가 互惠의인 경우 즉 兩当事者의 改良技術에 대하여 同一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平等한 것으로 인정된다.

2) 「技術導入者가 契約製品과 관련하여 改良을 한 경우 技術提供者는 一定한 對價를 支払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對價를 지급받는다 고 하더라도 技術導入者의 의사와는 관련없이 一방적으로 技術提供者에게 讓渡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不平等한 條項이다. 따라서 이 경우도 技術導入者의 改良技術은 技術導入者의 所有가 되도록 하거나 「價格은 상호 協議하여 결정한다.」라고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對價支給規定이 호혜적인 경우는 平等한 것이 된다.

3) 「技術導入者가 契約技術과 관련하여 改良을 한 경우에는 技術提供者에게 즉시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兩当事者가 技術을 改良할 가능성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技術導入者만이 자신의 改良技術을 提供하는 것은 불평등하다. 따라서 本條項을 삭제하거나 当事者間에 호혜적인 告知義務가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技術提供者의 동의없이 技術導入者가 契約技術을 改良 또는 研究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4) 「技術提供者는 자기가 이룩한 改良, 發明에 대하여 契約期間 동안 技術導入者에게 韓國內의 独占實施權(非独占實施權)을 부여한다. 技術導入者의 改良, 發明에 대하여 技術提供者는 契約期間中 韓國 以外의 全世界에서 独占實施權(非独占實施權)을 갖는다.」

韓國을 제외한 全地域에서 技術提供者가 独占實施權을 갖는 것은 改良, 發明을 讓渡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불평등한 것이 된다. 또 非独占實施權의 경우라도 實施權의 地域이 불평등하며, 「技術導入者는 東南亞地域, 技術提供者는 東南亞 以外의 지역에서 실시권을 갖는다.」는 규정도 實施地域이 불균형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規定은 兩當者間에 호혜적인 實施地域을 갖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5) 「技術提供者는 자기가 이룩한 改良, 發明 등에 대하여 契約期間 동안 技術導入者에게 韓國內에서 非独占實施權을 부여한다. 技術導入者의 改良技術에 대하여 技術提供者는 自國內에서 独占實施權을 갖는다.」

實施地域은 호혜적이나 實施權의 形態에 차이가 있어 不平等한 경우이다. 즉 技術導入者는 비독점이라는 약한 權利를 갖는데 반해 技術提供者는 독점이라는 강한 權利를 갖는다. 따라서 当事者間에 호혜적인 權利를 갖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6) 「技術導入者는 契約製品과 관련하여 技術提供者가 행한 改良, 發明의 特許權 등을 契約期間 동안 無償으로 사용하는 独占(非独占) 實施權을 갖는다. 技術提供者는 技術導入者가 행한 改良, 發明 이에 따른 特許權 등을 有効期間 동안 無償으로 사용하는 독점(비독점) 實施權을 갖는다.」

이 경우는 實施期間에 있어 평형을 잃고 있으

므로 当事者間에 호혜적인 實施期間을 갖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7) 「技術提供者는 契約期間 동안 자기가 행한 改良, 發明 이에 따른 特許權 등을 적정한 對價를 받고 技術導入者에게 供與한다. 技術導入者는 契約期間 동안 자기가 행한 改良, 發明 및 이에 따른 特許權 등을(무상으로) 제공한다.」

技術提供者의 改良技術에 대해서는 有償供與이나 技術導入者의 改良技術에 대해서는 無償으로 공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對價支払에 관한, 不平等條項의 예이다. 이 경우에도 当事者間에 호혜적인 對價支払規定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8) 「技術導入者는 技術提供者가 행한 改良, 發明 및 이에 따른 特許權 등을 契約期間 동안 無償으로 사용하는 비독점(독점) 實施權을 갖는다. 이에 再實施權은 포함되지 않는다.

技術提供者는 技術導入者가 행한 改良, 發明 이에 따른 特許權 등을 契約期間 동안 再實施權을 포함하여 無償으로 비독점(독점) 實施權을 갖는다.」

技術提供者만이 再實施權을 가지므로 權利의 행사범위에 当事者間의 불평등이 있다. 따라서 技術提供者만이 再實施權을 갖는다는 文句를 삭제하거나, 호혜적인 再實施權을 갖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 6. 技術使用料의 不當한 徵收

契約技術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技術使用料를 부과하는 경우(告示 第1項 바목)

가. 告示內容 및 目的의 解説

技術導入者가 자신의 기술로 또는 第3者로부터 도입한 기술을 사용해서 契約製品과 유사 또는 代替可能的한 제품을 이미 생산하고 있는 경우 당해 契約技術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품에 技術料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

다만, 契約技術의 使用與否判斷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部分品으로서 그 使用與否를 일일이 점검해야 하는 繁雜性을 피하기 위하여

技術導入者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部品를 사용한 完製品價格을 기준으로 經常料를 算定할 수 있다.

나. 具體的 事例의 說明

1) 「技術導入者가 契約製品과 유사한 제품 (또는 競争製品)을 製造·販賣하였을 경우 契約製品과 同額의 技術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또는 「技術導入者는 本契約締結 以前에 이미 製造·販賣하고 있던 同種製品에도 契約製品과 同額의 技術료를 支拂하여야 한다.」

技術料는 당해 契約製品에 대해서만 支拂되어야 하며 契約技術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技術料를 지불하라는 것은 불공정하다. 또한 이를 인정하는 경우 競争製品の 취급을 제한하는 효과도 유발된다. 따라서 本條項은 삭제되거나 契約製品에 대해서만 지불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2) 「技術導入者는 契約期間 滿了 以後 契約製品을 생산할 경우 特許權 등이 消滅할 때까지 技術料를 지불하여야 한다.」

새로운 延長契約을 締結하지 않는 이상 技術導入者는 특허권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또한 技術提供者도 그와 같은 제품에 대해 技術料를 부과할 수 없다. 特許權이 아닌 「노하우」 등 技術情報인 경우 契約滿了 이후에도 技術導入者가 당연히 사용할 수 있으므로 技術料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本條項은 삭제되어야 한다.

## 7. 契約期間 滿了後의 技術使用 制限

技術導入者가 導入한 工業所有權 以外에 대하여 契約期間 滿了後에 이미 제공한 技術資料의 返還을 要求하거나 계속적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  
(告示 第1項 사료)

가. 告示內容 및 目的의 解説

契約期間 滿了 이후에는 商標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등의 工業所有權의 사용이 제한된다. 즉, 契約技術에 대한 特許權이 소멸되지 않는 한 技術提供者는 特許期間이 만료되거나 또는 提供

技術이 公知化될 때까지 그 기술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法的根拠를 갖고 있다. 다만 技術導入者가 契約製品의 생산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여왔고 또 契約技術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生産活動을 중단하여야 되는 導入者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第3者에게는 秘密을 지킨다는 保障下에 契約期間 滿了 以後에도 契約技術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하우 (Know-How) 등의 一般技術 情報의 사용을 契約滿了 以後에도 제한하는 것은 그러한 技術에 대한 代價가 이미 지불되어 知識으로써 이전되고 技術導入者의 所有物化한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契約內容이 된다. 다만 技術導入者의 歸責事由로 早期終了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나. 具體的 事例의 說明

1) 「契約期間이 만료된 이후에 技術導入者는 契約製品을 製造·販賣하여서는 안되며 제공된 모든 技術資料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契約期間 滿了 이후에는 當該技術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契約製品의 製造·販賣를 금지시키고 이에 관련된 情報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不公正한 契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特許權 등 工業所有權에 대하여는 이러한 制限이 가능하나 當該 特許權 등이 소멸된 후에는 사용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技術情報의 경우 契約期間 滿了後에는 技術資料를 반환하지 않고 當該技術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工業所有權이 허여된 경우에는 工業所有權 消滅 이후에 當該技術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契約이 (早期)終了되는 경우 技術導入者는 契約製品을 製造·販賣하여서는 안되며, 제공된 모든 技術자료 등을 技術提供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技術導入者의 歸責事由가 없는 한 當該技術의 사용이 금지될 정당성이 없으며 이와 같은 규정에는 반드시 「技術導入者의 歸責事由로 早期終了되는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 8. 其他 國際慣例上 不당한 条件

技術導入者에게 國際契約慣例上 一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不당한 拘束条件을 부과하는 경우 (告示 第1項 아호)

#### 가. 告示目的 및 내용의 解説

國際慣例上 一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不당한 拘束条件이란 선진국 상호간에 통용되는 國際慣例상의 許容範圍를 벗어나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条件을 강요하는 것을 말하며 다양한 契約書 形態上 評價할 수는 없으나 기본이 되는 것은 互惠平等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具體的 事例의 說明

1) 「技術導入者는 契約製品販賣와 相關한 廣告 및 販促活動에 對하여 技術提供者의 事前同意를 받아야 한다.」 또는 「技術導入者는 매년 販賣額의 3% 이상을 廣告비로서 지출하여야 한다.」

廣告費, 廣告方法 등을 구체적으로 指定하거나, 技術提供者의 事前同意(승인, 합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經營權의 不당한 干涉이 되므로 이와 같은 규정은 삭제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2) 「技術導入者는 技術提供者의 書面同意를 얻지 않고는 契約製品의 모델 및 그 부품의 디자인을 변경시킬 수 없다.」

商標權, 意匠權의 사용에 따라 品質保證을 위한 不특이한 경우 이외에는 技術導入者의 經營權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關聯規定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商標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技術導入者가 變경한 모델 및 디자인에 對하여 技術提供者는 적절한 助言을 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바람직하다.

3) 「技術導入者는 契約製品 販賣에 있어서 40% 이상의 市場占有率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契約를 解除할 수 있다.」

市場占有率은 製品需要, 價格, 品質 등에 결정되는 것으로 技術提供者의 強요에 의해 一定水準이 強요되는 것은 市場確保를 위한 不公正

去來를 유발시킬 우려가 많다. 따라서 「技術導入者는 契約製品의 판매에 對하여 最善의 노력을 한다.」 등의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4) 「技術提供者는 契約技術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損害에 對하여 免責된다.」

技術提供者가 提供技術에 對하여 責任을 회피하는 것은 落後 또는 不良技術이 도입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技術料支払의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契約技術 自体의 하자에 對해서는 責任을 지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製造過程 또는 販賣過程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對한 技術提供者의 免責條項은 技術, 人力, 原材料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인정될 수 있다.

5) 「技術提供者는 本契約를 언제든지 解除할 수 있다.」

技術提供者가 언제든지 契約를 解除하는 것은 技術導入者의 지위를 현저히 불안정하게 하며, 중도의 일방적 파기로 技術導入者에게 不당한 불이익을 강요하기 쉽다. 따라서 契約의 解除는 원칙적으로 技術導入者의 歸責事由가 있거나 또는 兩當事者間의 합의가 성립된 때에 한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6) 「紛争이 있는 경우 技術提供者가 속한 국가(예: 일본)의 仲裁機關의 仲裁에 의한다.」

技術提供者의 國內機關이 紛争을 仲裁하는 것은 中立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紛争의 仲裁는 상호 호혜적인 기관(예: 韓日商事, 國際商事)이 담당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